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협력부처”라 함은 <u>지식경제부장관(이하 “장관”)이</u> 산업별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협의하는 고용노동부 및 <u>교육과학기술부</u> 등 관계 부처를 말한다.	2.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(이하 “장관”)이</u> ----- ----- ----- <u>교육부</u> ----- -----.
제4조(구성) ①·② (생략)	제4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의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. 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.
1. 사망, 실종, <u>연락두절</u> , 금치산 또는 <u>한정치산 선고</u> 기타 협의체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	1. ----- <u>연락두절로 인해</u> ----- ----- -----.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타</u>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<p>④ 협의체 위원이 사임하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되어 <u>새로이</u>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새로이</u> 개시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7조(사무국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산업별 협의체의 <u>일원이</u> 되며, 해당 기관의 대표자는 산업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④ ----- ----- <u>새로</u> ----- ----- <u>새로 시작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구성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